

카메라 및 관련 제품 특소세 폐지 시급

올 초부터 사진 관련 단체와 업체가 하나가 되어 진행해 온 '카메라 특소세 폐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개정은 무산됐다. 이제 내년 국회 개원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비록 성사되지는 못한 데 안타까움은 남지만, 그래도 이번 활동은 모처럼 공동 목표 아래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됐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1회성 목소리 높이기'에 그치지 말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가 내년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리/편집부

카메라 특소세 폐지를 위해 올들어 사진 관련 단체 및 사진 업체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국 올해 내 개정은 어렵게 됐다.

한국광학기계협회, 대한프로사진가협회를 비롯한 6개 단체와 LG상사(주)는 올 초부터 시작된 연이은 건의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 4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등에서 제외되자 3일 뒤 신속하게 의견을 모아 '카메라 관련 특별소비세법 개정을 위한 사진관련 협회, 단체 공동건의문'을 보내며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를 통해서 '올해 내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최종 입장을 듣고 내년을 기약하기로 했다.

LG상사(주) 측은 '기업 내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정부 관계 부처의 담당자들이 특소세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 조직 개편 및 시기적인 문제 등 몇몇 상황이 겹쳐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관계 부처의 실무자급에서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카메라 특소세 폐지'를 위한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월 재정부에 2차례 청원 필요성은 설득, 개정은 무산

그간 카메라 특소세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수 차례 피력해 온 바 있는 한국광학기계협회(회장·이원승), 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백현기), 대한프로사진가협회(이사장·박성열), 한국사진학회(회장·김영수),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노재덕), 한국광고사진가협회(회장·양세민). 이 단체들은 7월 초 공동으로 재정경제부에 사진기 및 관련 제품의 특별소비세 관세대상 제외를 요청했다. 올해 SK상사(주)로부터 넘겨 받은 캐논 카메라 사업을 시작하면서 밀수품과의 전쟁을 벌여온 LG상사(주), 아남인스트루먼트(주)도 여러 채널을 통해 특소세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카메라 특소세 폐지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하나 '명분과 형평성'에 따른 제한으로 올해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첫째 '명분 없음'은 작년에 캠코더를 비롯한 전자제품 등에 대해 대규모 특소세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연이은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며, 둘째 '형평성 고려'는 경제력 향상에 따라 적용 품목 전반에 걸쳐 특소세가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한다면 카메라뿐 아니라 전품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안에서 제외된 것이 확실해지자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대한프로사진가협회, 한국사진학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광고사진가협회와 LG상사 관계자는 9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특소세 폐지를 위한 범사진계 대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다시 한번 청원서를 제출했다.

LG상사(주) 조병상 부장은 "법 개정은 무산

돼 시행령 개정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 했으나, 이것도 여의치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한프로사진가협회 박성열 이사장은 "차라리 작년에 캠코더 등의 특소세가 개정될 때 같이 나서서 작업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다."고 안타까워했다.

여러 단체와 LG상사(주)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내년에는 더욱 체계적으로 카메라 특소세 폐지를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켜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번 작업을 밑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특소세 폐지를 위해 노력해 내년에는 꼭 목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카메라 특소세 왜 폐지되어야 하나 밀수품 유통 조장, 사진문화 발전 저해

현재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고급사진기는 1개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고급사진기 관련 제품(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은 1개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에 대해서 특소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사치품에 부과하는 특소세를 생계수단이나 교육기자재로 이용되는 카메라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이로 인해 밀수를 부추겨 유통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1. 밀수품 조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밀수품은 정상품에 비해서 40% 가량 가격이 낮다. 당장은 잘 팔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비자, 정상적인 유통업체, 정부에게 모두 피해를 주고 있다.

밀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AS를 기대할 수 없다. 또 정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무자료로 거래되는 밀수품 때문에 1년에 약 26억원 가량의 세금을 잃고 있다. 특소세가 폐지된다면 오히려 투명거래가 시작돼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진문화발전 저해, 관련 시설 투자 억제

생산재이거나 교육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가용 사진기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치성 소비의 억제가 아니라 사진관련 시설 투자를 억제하는 면이 강하다. 또한 전문작가나 광고업자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된 비싼 사진기와 관련 제품 구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도 작용한다.

4. 형평성 잃은 조치

작년에 대규모 개정을 통해서 특소세 품목을 대폭 폐지한 바 있다. 여기에는 캠코더, 음료수 등뿐만 아니라 스키·볼링용품 등이 포함됐지만 사진기는 제외돼 제조업자 및 종사하는 업종간에 형평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